

근로복지공단의료지부 전임자숙소관리지침

2019년 4월 17일 제정

2020년 6월 18일 개정

2022년 5월 18일 전면개정

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근로복지공단의료지부 전임자숙소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관리자) 전임자숙소의 관리자는 운영위원회가 당연직으로되며, 운영위원회에서 숙소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제3조(입주대상 및 기간) 전임자(근로시간면제자,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) 중에서 비연고자로 제한하며, 입주기간은 근로시간면제기간으로 한다.

제4조(입주자의 제한 행위)

- ① 전임자외의 타인에게 대여(월세, 전세등)
- ② 영업장소로의 사용
- ③ 숙소의 구조 변경
- ④ 그 밖에 숙소의 재산손실을 가져오는 행위

제5조(노동조합의 경비부담) 전임자숙소 사용 및 유지를 위한 노동조합에서의 경비부담 항목은 아래와 같다.

- ① 입주자가 없는 기간 내 발생하는 입주자 부담금(일할 계산)
- ② 가전제품, 가구, 비품(별첨1)
- ③ 전기·수도·냉난방시설(설치비용 포함)
- ④ 건물이나 부속시설물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보수
- ⑤ 장기수선충당금 및 재산세 등 세금
- ⑥ 그 밖의 기본생활유지와 복리후생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

제6조(입주자의 경비부담) 전임자숙소 입주자의 경비부담 항목은 아래와 같다.

- ① 관리비, 가스사용료(입주대상임에도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입주하지 않는 전임자 포함)
- ② 단순교체 가능한 수리비
- ③ 가전제품, 가구 등의 고의적인 파손 및 분실

부칙(전면개정2022.5.18.)

이 지침은 2022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【별첨1】

기본생활 가전제품 및 비품

| 연번 | 비품명 | 수량 | 비고 |
|----|-------|---------|----|
| 1 | 전자레인지 | 숙소당 1개 | |
| 2 | 가스레인지 | 숙소당 1개 | |
| 3 | 전기밥솥 | 숙소당 1개 | |
| 4 | 세탁기 | 숙소당 1개 | |
| 5 | 청소기 | 숙소당 1개 | |
| 6 | 냉장고 | 숙소당 1개 | |
| 7 | TV | 숙소당 1개 | |
| 8 | 에어컨 | 숙소당 1개 | |
| 9 | 옷장 | 전임자 인원별 | |
| 10 | 식탁 | 숙소당 1개 | |
| 11 | 커튼 | 거실 및 방 | |
| 12 | 침대 | 전임자 인원별 | |
| 13 | 쇼파 | 숙소당 1개 | |